

아동학대 현장에서 바라보는 정부대책

임윤령

(전)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2021.01.19.) 개선점

1. 아동학대 사망사건 때마다 정부대책이 나왔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

- 2015년 : "근본대책 마련 못해 "
- 2016년 : "어슬픈", "유명무실", "말잔치"
- 2018년 : "실효성 떨어져"
- 2021년 : "여론 잠재우기용", "보여주기식"

□ 정부의 **획기적인 제도개선, 예산지원, 인력지원**

없이는 강화방안은 유명무실하게 됨.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아동학대 대책은 실제 현장에서

꼭 적용되고 작동되는 대책이어야 함.

[\[간담회\] 정부의 아동학대대응 대책을 진단한다](#) 3시간전

정부의 1.19 아동학대대응 대책을 진단한다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책무 강화 및 아동법 제정촉구 간담회 개요 일시 : 2021년 1월 29일(금) 오후2시 장소 : 온라인 생중계 www.peoplepower21.org/Welfare/1761636 참여연대

['서현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정부 대책은 말잔치 뿐](#) 2016.01.19.

회의 등을 열고 대책을 내놨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정부가 업종단 대책은 '말잔치'였고, '여론 무마용'일 뿐이었다. <'말'뿐인 정부 대책=인천... www.ezday.co.kr/bbs/view_board.html?q_id_linfo=1353&q_sq_board=7.. 이지데이

[학교 성폭력·아동학대 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발표](#) 2017.03.07.

학교 성폭력이 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등이 끊이지 않아 정부가 대책을 내 계획 등이 빠져 '무늬만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석 www.ahacenter.kr/network/press/28119 아하 서울시립청소..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 정부 대책 '유명무실'](#) 2016.10.05.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이 정부도 아동학대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정책 원형이 사건 등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국의 무관심 속에 healthtomato.com/view.aspx?seq=695275 헬스토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정부대책 질타](#)

를 적용해야 할 수 있다"며 "감당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정부 과 관련, "단기적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근본적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news.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564

[\[사설\] 아동학대, 어슬픈 정부대책](#) 2016.10.05.

발생할 때마다 분노하는 것 외에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웃 아이도 내 아이처럼 활약해지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206&replyAll.. 인천일보

2. 아동학대 대응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 되었는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간 확대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여러 안(인센티브, 평점 점수 등) - 시간외 근무 수당 확대 	<p>대책이 실제 장기근속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지 의문</p>
----	--	---------------------------------------

- 한 아보전 관장: "내가 알기로는 대책과 관련해서 의견 요청 받은 관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
- 한 APO : "인센티브보다 빨리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
- 한 전담공무원: "작년 채용되었으나 대기 기간이어서 다른 업무 보고 있다"

□ **현 시점에서 대책을 그냥 쏟아 내기 보다 그동안 많은 대책들이 나왔음에도 학대사망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에서 반영**하여야 함.

3.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아동중심, 가족중심 실천 방향성 부재(즉시분리의 문제점)

<p>대책</p>	<p>- 즉각 분리 조치</p>	<p>- 현 아동이 갈 시설(쉼터, 양육시설 등) 부족 - 2회, 명 상흔, 학대 의심, 가해자 조사 방해 등 조건은 기계적 조치 야기</p>
------------------	-------------------	---

- 분리조치시 고려사항으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뒤야 함.

학대 당시의 맥락적 상황, 빈도, 강도, 아동 연령, 아동 의사(생각, 계획, 감정 등), 분리 설명, 재학대 위험성, 가해자 특성, 아동 분리트라우마, 아동과 가족의 유대관계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함.

- 이러한 고려 없이 즉각 분리조치시 역효과 우려

(시설 가출, 분리시 저항, 분리트라우마, 개입기관에 대한 거부감, 가정복귀 후 발생하는 학대 진술 거부 등)

□ 단 1회의 학대라도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분리 할 수 있는 **전문성, 민감성** 필요. 아동학대판단 전이라도 조사와 안전의 필요성 때문이라면 분리 가능하게 하며, 조치에 대한 면책규정과 민원에 대책 필요

4.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아동중심, 가족중심 실천 방향성 부재(가족 지원 필요)

미국 입양 및 안전 가족 법률(1997) 아동보호의 3가지 국가적 목적: 아동 안전, 영속성, 아동 복지

'아동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아동은 가족이 필요하고, 집이라는 영구적 장소가 필요. 연속성과 관계는 아동의 건강발달의 중심. 따라서 아동보호 노력은 안전이 유지되는 한 아동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에 초점을 뒀어야 함.

아동보호업무는 가족을 지원하는 방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아동복지 달성이 목표임'

- 분리 조치 이후 어떻게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고, 재결합을 수행 할 것인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사례관리 수행 중 거부 시 어떻게 할 것인가?

□ 아동학대대응체계의 목표는 "아동 안전", "가족 지원" 이 되며, 아동 중심, 가족 중심, 아동 이익 최우선, 강점 관점, 트라우마 근거 관점, 아동발달적 관점, 증거기반 관점, 관계적 관점 등의 실천 가치와 신념이 아동 학대대응 인력의 교육, 업무 수행 과정에 적용되어야 하며, 사례관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 강화 필요함.

5. 아동학대 대응 체계(과정)의 단절성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최초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판단, 조치,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평가, 종결 등 전 개입 과정에서 이뤄짐.

대책	초기 대응(신고접수, 현장조사, 판단)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과정에 대해서 대책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	-----------------------	-------------------------------------

-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전체 과정(현장조사, 사례관리)**을 통해 아동의 안전, 보호, 재학대 방지, 아동 복지 증진, 가족 기능 강화 및 회복, 가족 재결합 등 **아동학대예방체계의 목표와 미션이 달성 가능하도록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대책안**이 만들어져야 함.

6.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대응 인력 전문성 강화, 장기근속 유도 등)의 **편향성**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두 축은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 현장조사 : 신고 접수, 조치(분리를 포함한 법적조치), 학대 판단(가정에 국가 개입 및 지속 서비스 필요 판단) VS 사례관리 : 아동 안전 확인, 재학대 모니터링, 가족 기능 강화, 가족 재결합
-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필요한 개입과 개입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놓치게 됨. 반대로 사례관리가 안되면 재학대와 재신고의 악순환 및 에너지와 예산 낭비 우려

대책	- 초기 대응 관련 인력(전담 공무원, 경찰)의 전문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상대적 사례관리 대응 인력(아보전)의 자괴감 및 사기 저하 발생(형평성 필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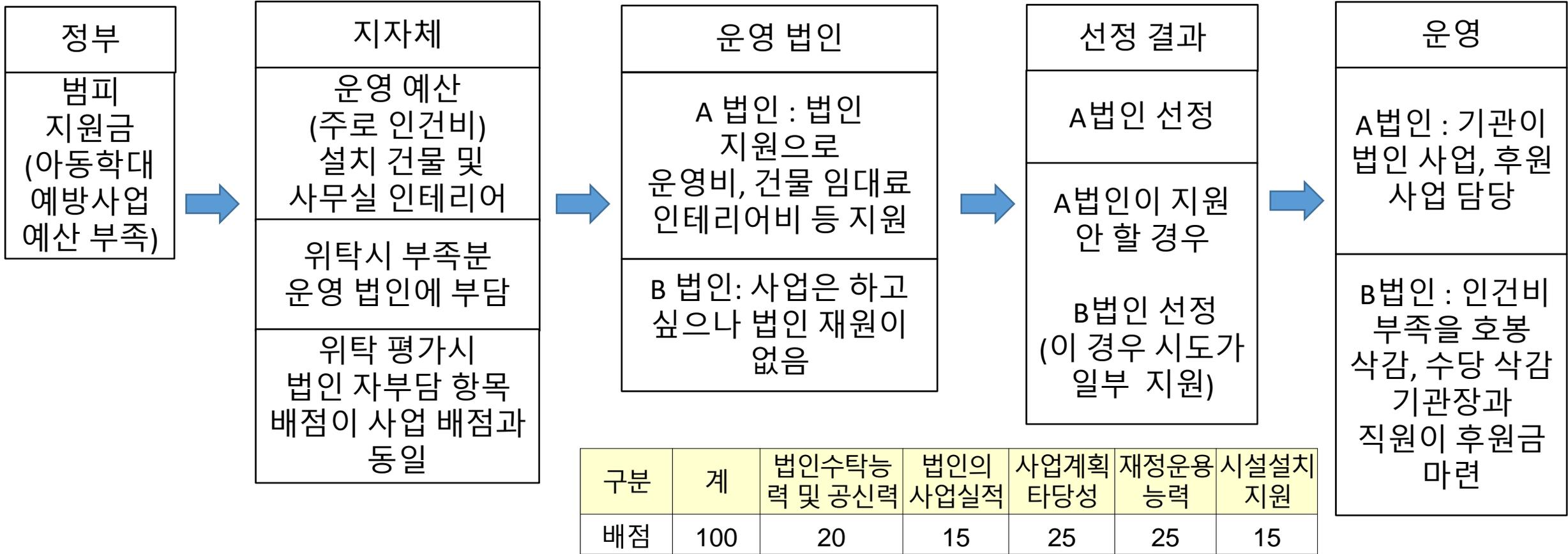
-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인력의 보강을 위한 재정 지원도 꼭** 염두에 뒤야 함. 추후 대책에서라도 아보전에 대한 처우개선과 심층 사례전문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6-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어려움

1. 인건비 지원 부족, 운영 부담 등으로 아보전을 맡을 운영법인 찾기 어려움.
2. 지자체에 따라 지원 예산이 다르고 운영 법인에 따라 자부담(0원~2억이상)이 달라 급여, 수당, 인력 차이 발생
3. 운영 법인에 따라 기관이 법인 사업 수행하는 지부 역할, 기관장 및 직원 후원 업무 부담
4. 소형 법인은 직원의 퇴사, 대형 법인은 직원 퇴사와 이직 등으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
(2019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이직율 28.5%, 상담원 평균 근속 기관 30개월)
5. 지역, 기관에 따른 인력 선발에 문제 (직원 총원까지 몇 달 공고, 전문대,사회복지사 2급 겨우 선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최근 3개월 구인란 상담원 검색 80% 계약직, 20% 정규직 모집)
6. 법인에 따라 인사 문제 발생(법인 차원 학대업무 부적합 인력 배치)
7. 평균 3~4개 시군 관할로 인한 접근성 한계와 시간적 물질적 소요.
8. 운영 법인에 따른 매뉴얼, 프로그램 차이 / 기관별 담당 사례 수 차이 (서비스의 질적 저하 요인)

□ 첫째,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 둘째, 정부의 아동학대 수행기관 관리 감독.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설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넷째, 향후 특별 법인체 구성을 통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동일 법인체 설치하여 운영 및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전환 고려

6-2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운영 흐름



운영 어려움(직원 이직, 사건 및 민원 발생 부담)으로 점차 위탁 신청 법인은 줄어들고 있음.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아동학대사업의 투명성, 적절성, 효율성 등 지도 감독 체계 없음.
 아보전간 전문성 간극 발생(국가아동보호체계는 지역, 법인 구분 없이 기본 전문성 확보 필요)

7. 시·도차원의 아동학대 전담인력, 아동권리보장원 설치방안 **구체성 결여**

<p>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전담인력 - 시·도별 아동권리보장원 설치 - 경험 있는 전문가를 교수요원, 수퍼바이저 	<p>언제, 누가, 어떻게, 역할은? 몇 명? 구체적 내용 결여 몇 명정도가 아니라 최소 부서 단위 필요(아동보호국 산하 아동학대예방과)</p>
-----------	---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조치, 학대 판단, 조사 내용, 방법에 대해서 누가 수퍼비전? 검토는?
 (학대전담공무원 단독으로 아동학대 사례를 일반 사례로 판단했을 때 누가 감독?)
- 아보전의 사례 종결의 적절성, 개입의 효과성 등 누가 관리 감독? 검토는?

□ 국무총리실 산하 아동학대컨트롤 타워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부처를 통합운영 기구 필요**. 시·군·구의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최소 시·도 단위에 조속히 만들어져야 함**. 이를 통해 아보전, 전담공무원, 경찰 등 유관기관의 역할 조정, 협업 구축, 심각한 사례에 대한 지원 역할 수행 필요. 시·군·구 단위에 전담공무원의 조사, 판단, 조치에 대한 **전문 수퍼비전 제공할 팀장급 수퍼바이저 배치**

8.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책임 주체 불명확**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중 과실과 문제에 대한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시·도? 지자체장? 운영 법인?)

- **정부차원의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책임 부서가 있어야 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전담공무원, 경찰, 아보전에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체계가 없음. (운영법인? 아동권리보장원? 시·군·구청? 시·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최소 전국 아보전의 업무량을 비교하여 상담원의 평균적 사례량을 갖도록 인력 조정, 예산 조정필요 (미국 뉴욕주 웨체스터카운티는 인구 100만명에 학대전담 공무원 130명, 아보전 상담원 1명이 담당하는 사례가정은 12~15)

- **최소 시·도 단위의 아동학대부서가 관할 광역시·도의 아동학대 대응과 개입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의 권한과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 (이전 중앙차원 전산모니터링 하였으나 현재는 없음) 기관 인사의 적절성, 운영의 적절성, 아동학대예방 사업 운영의 자문과 관리감독 수행 필요

9. 아동학대대응체계와 더불어 **아동보호체계의 동반 개선 필요**

- 학대신고로 개입 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고, 사전 학대의 우려가 있는 가정(빈곤 가정, 미혼부모 가정, 영유아 돌봄 가정 등)에 대해서 예방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아동학대 개입과 더불어 아동이 시설보호 되는 경우, 시설의 운영 철학과 가치 또한 아동 친화적, 아동 중심적, 가족 중심적 보호와 양육을 해야 함. (예: 시설의 종교 강요, 직원의 학대, 또래간 폭력, 군대 문화, 초기 3개월간 원가족 면회 금지, 면접과 심사를 통해 아동 입소 등)
- 사법체계 또한 아동중심적, 가족중심적 조치가 이뤄져야 함.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가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판사, 검사의 인식 변화 필요)

□ 아동은 **출생부터 국가의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함. 아동학대 신고 이후가 아니라 학대 우려 가정을 발굴해서 학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함. 또한 국가 모든 제도와 기관들이 아동권리 보호와 이익 최우선을 기본으로 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10.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덧붙여 드는 **궁금증 1**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교육시간 확대로 확보되는가?

- 전문성은 교육과 현장경험이 맞물려 지속적, 반복적 수행을 통해 쌓여짐.
수퍼비전을 통해 아동복지실천 관점과 실천 기술 습득 필수.
- 문제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선발 자체가 사회복지전담인력임.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지만 인사이동으로 이동시 원점으로 돌아감. APO의 이동도 동일함.
- 해결점: 아보전이 2013년 9월 30일까지 업무를 전수할 것이 아니라 이미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으로 버티고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일정 경력 이상 상담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10.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덧붙여 드는 **궁금증 2**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화 방안(2018년 보건복지부 안-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권리보장원 산하 기관으로 배치)에 있어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당시 18개 법인 중 14개 법인이 공공화 방안 동의, 2개 법인 비동의, 2개 법인 의견 보류
- 대다수 법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산하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 했으며, 이에 따른 연구('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역할 재정비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화 방안 추진을 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결국 현장조사 영역만 공무원이 수행하고, 사례관리는 현 법인 위탁 체계로 남게 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선과 방향성을 담았는데 연구결과가 궁금함.

나가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또는 원가정 보호할 때, 시설에 있는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때,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정신병원에 보내며, 경찰 수사로 법정에 세우며, 재판을 지켜볼 때, 행위자가 유서에 내 이름을 쓰고는 억울하다고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항상 가지는 고민이 있다.

“과연 이 결정이 아동과 가정에 도움이 될까? 잘 한 선택일까? 잘 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날 원망하지는 않을까?”, “내가 뭐라고 한 인간의 일생에 있어, 아동기를 부모와 함께 살지, 아니면 부모를 떠나 시설에서 살게 할지를 결정하지?”,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

직원들이 학대업무로 인해 잠 못 자고 트라우마를 겪으며 결국 현장을 떠날 때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 실수도 많았다. 아픔도 많았다.

하지만 가끔 고맙다고 찾아오는 그들에게 난 미안해 하며 물어본다.

“그 때 선생님의 결정이 원망스럽지는 않니?”

누군가는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바라보며, 성장하는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자리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2021.01.19.) 개선점(세부내용)

『초기 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1. 아동학대 초기 조사 대응의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 교육

교육의 효과성을 기대하려면, 우선 전담공무원의 지속근무가 우선되어야 하며, 전수받는다면 경력직 채용하면 안되는가 라는 의문이 듭.

- 교육시간을 늘리는 것은 당연함, 하지만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현장실천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제대로 숙지가 됨.

(예, 어느 지역에서는 2주간 전담공무원 교육을 시켰더니 인사이동 됨)

- 교육 내용에 아동복지 실천의 가치, 미션, 윤리, 판단 기준 등 아동학대개입에 있어 기본적 가치와 신념 교육과정 필수

- 2013년 9월 30일까지 아보전에서 전담공무원 교육을 전수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이후로는 안전화 되어 교육을 안 해도 되는지?

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의 공무원을 교육을 해야 하는지? 전수자의 역할이라면 차라리 아보전 상담원을 경력직으로 채용한다면 교육과 전문성에 대한 고민을 줄이는 것은 아닌지? (경찰: 심리학이나 상담전공자를 특별채용으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조사 역할 수행)

2. 판단 척도

- 학대판단 척도, 위험도 평가척도(경찰, 아보전, 전담공무원, 법원 등)의 통일성 필요

- 교육을 통해 응급조치나 분리조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판단, 심각성을 갖는 것이 필요

3. 장기 근속

- '전문직위로 지정하는데, 최소 3년 근무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이 쌓였는데, 주민센터, 시군구청 사회복지직으로 이직하고자 할 수 있음. 지금이라도 **순환보직 없이 전문경력관 선발, 임용이 필요함.**

경찰

1. 교육

전담공무원과 동일함. 아무리 좋은 교육을 많이 받더라도 인사이동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 인사이동으로 1~2년마다 계속 교육해야 함.

- 아동학대 인지, 대응 감수성을 사이버 교육으로만 향상할 수 있는지 의문. 실천적 면대면 교육 필요
- 심리학 사회복지학 학위 취득보다는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

2. 보고 점검

- 전일 신고된 건 모두를 합동조사가 가능한지, 여청계가 아동학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님. 오히려 유명무실한 대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

3. 판단 척도

- 앞서 언급한대로 전담공무원, 경찰이 조처에 있어 동일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함. 교육과 실천을 통해 가정폭력도 아동학대이며, 신고자 비밀보장, 학대 행위자 두둔 금지 등 주의 요함
- 경찰의 경우 APO는 9~18시까지 근무, 이 후 시간에는 수사팀이나 112 신고시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하는데, 경찰 내부 정부공유와 아동학대 관련 기관 공유가 안됨. 따라서 현장 출동하는 모든 경찰대상 체크리스트 사용 교육이 필요함.(아동학대에 대한 교육필요)

4. 장기 근속

- 일선경찰은 APO 역할을 기피함. 학대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며, 신입경찰이 맡다 보니 수사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받기 힘들고, **아보전에 전달이 안되는 경우 발생**

2.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 정립 및 협업 강화

1. 역할 구분

- 지자체마다 대응 지침을 개정하자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음. **기본적 지침은 중앙차원에서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시행되도록 해야 함.**(기본적 역할은 동일/ 지역적으로 보완사항은 지자체가 검토하여 적용)
-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판단을 하는데, 애매할 경우 수사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발생, 경찰은 수사하고도 전담공무원의 학대 판단이나 소견을 원함. 이러한 부분에 있어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함. 전담공무원의 학대판단으로도 초동 조치가 가능하며,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복지적 관점의 판단과 조치일 경우 법적 분쟁이나 민원에 대응가능한 지침이나 법적 규정 필요.**

2. 신고 접수

- **112 신고로 통합했음에도 2018년에는 약 50%, 2019년에는 약 40%가 112로 신고됨. 대부분 아보전 일반전화로 신고접수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112 신고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아동학대전용 신고전화에 대한 고민필요**
- **신고 외 전화는 어떻게 129로 연결할 것인지, 아보전이나 전담공무원도 학대 의심 내용을 듣게 되면 그들이 112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라고 해야 하나?**

3. 출동 (조사 정보는 민감정보라고 안 주는 경찰서가 여전히 있음.)

4. 판단

- **현장 판단의 의미가 명확해야 함. 조사나 사례관리 중의 현장 판단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 내용을 보고 받아 결정권자와 상의해서 조치가 이뤄져야 함**
- **현장 전문성을 지원하는 체계는 외부에 협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담공무원, 경찰, 아보전 팀 내에서 즉각 보고, 조치가 이뤄져야 함.**
- **통합사례회의 운영에 있어 경찰의 개최 요청권(?), 경찰도 필요하면 회의를 진행하면 됨.**

3. 현장 대응 이행력 강화

1. 현장조사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듭. (수급가정, 빈곤가정일 경우 오히려 반감, 상향보다 적용이 문제)

2. 면책규정(복지적 판단에 의한 아동 안전확보, 보호조치에 면책 규정 필요)

3. 업무방해죄

- 학대행위자 뿐만 아니라 행위자를 두둔하는 비가해 부모, 친인척, 관계인 모두를 포함하여야 함.

『대응인력 확충 및 업무여건 개선』

1. 대응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배치 독려가 아니라 배치하여야 함. 시도에서는 배치하라고 하지만 시군구에서는 인력배치를 미루는 상황임.
- 특별채용이나 별정직 채용 등으로 아동학대 현장 경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

아동보호전담요원

- 분리보호 아동 양육상황 점검을 위한 전문가 상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누구며, 어떻게 상시 제공한다는지 구체성 결여

경찰

- 13세 미만 아동학대 전담 수사를 위해 시도 경찰서에 여청수사대를 신설한다는데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음. 성폭력 수사팀을 따라 만드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시도 경찰청의 여성수사대가 사건을 감당하려면 수십명을 되어야 함. 현실성이 부족함.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인데, 효율성이 떨어짐. 거리적 문제 발생, 도경찰청에서 원거리는 2시간 30분 소요(왕복 5시간).
- 여청강력팀의 경우 주간 근무만 하는데, 야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하려는지 궁금함.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인력강화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궁금함.
- 학대판정절차 운영 상황은 지자체 경찰의 주요 업무인데, 여기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로 구분되어 있음.

2. 업무여건 개선 지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지원(1월 중 70시간, 협업 지정 시 상한제한 없음)

“지금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많은 야간 출동 및 시간 외 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최대 10시간 내외였음.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년 가까이 업무를 했을 때와 공공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해야 한다는 시점에서 지원 방향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든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진술내용)

3. 현장 대응 인력 지원체계 강화

- 아보전 퇴직 관장 등 경험 있는 전문가를 전문 교수 요원, 수퍼바이저로 양성, 시도별 전담인력 구성 등의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행 내용이 결여됨.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내용이 있어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에 교육컨설팅부가 아니라 교육지원부서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함. 교육의 실질적 제공, 교육을 위한 자원 개발 및 연계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시도별 전담인력의 기준은 무엇이며, 인원은? 배치 일정은? 업무가 자원개발 관리인가?
- 시도별 아동권리보장원 설치한다는데 시기는? 인원은? 인원의 전문성은? 이것과 시도별 전담인력과의 차이는?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 1년 내 2회 이상 신고 아동 중 학대 강한 의심(?), 보호자가 답변 방해(?)의 경우 즉시 분리보호한다는데 일괄적 적용을 해서는 안됨. 정도와 심각성, 아동의 욕구 등 다양한 고려가 있어야 함. 아동에게 분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준비 없이 조치에 따른 즉각 분리는 아동에게 분리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고, 향후 학대발생시 분리가 싫어 학대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1.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인프라 확충

- 현재 양육시설과 쉼터에 아동이 갈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데, 분리를 적극 실시하도록 시행되는 것은 앞 뒤 순서가 맞지 않는 대책임. 시도별 일시보호시설의 설치에 광역단위가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한 시설이어야 함. 조속히 쉼터를 늘려서 아동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으며, 가족과 재결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 시도 차원의 일시보호체계 강화

- 시군구에서 쉼터,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관리 감독 필요 (시설내 학대, 폭력 발생, 종교강요, 인권침해요소 파악)
- 시설에서 아동친화적, 아동권리적 보호가 되도록 지속적 교육과 관리 필요(아동을 선별 또는 면접을 통해 입소 받음)

3.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 지원

시도별 거점 아보전 내 심리치료센터 운영-현재 경북의 경우 거점 아보전의 개념이 없어졌고, 동서남북 아보전의 지역 구분만 되어 있음.
이 경우 심리치료 센터의 경우 거점 지역까지 아동이 치료받을 수 있을지 의문.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

2.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부 협력 강화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 법원의 결정시한을 **최소 5일 이내로** 해서 아동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 필요
(경험상 6개월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고, 항고하여 또 몇 달 더 소요됨. 그 기간동안 아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 법원 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다름 따라서 **법원의 학대 범죄의 처분의 양형 기준 통일 필요**
(어느 법원에서는 비슷한 학대 수준에 6개월 상담 1년 보호처분을 하나, 어느 법원에서는 불처분 내림)

감사합니다
